

-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,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,
-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함.

2. 주요내용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)
 -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(안 제12조제2항)
 -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(안 제14조의2)
 - 개발행위허가기준(안 제17조 관련 별표1)
 -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(안 제20조제3항)
 -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(안 제20조의2)
 -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(안 제23조 관련 별표

2~23)

- 분과위원회(안 제63조제1항)
- 위원의 제척 및 회피(안 제63조의2)
- 의견청취(안 제65조의2)
- 수당과 여비(안 제6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【붙임 1】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
 - 1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 - 2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【2017. 09. 14. ~10. 10.(26일간)】
 - 3) 비용추계서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【붙임 2】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 / 【붙임 3】

4. 검토의견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하도록 위임한 사항(안제14조제2항)과 같은법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일부 변경되어 이와 맞게 조례를 개정(별표2~23) 하고,
- 별표 1의1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 허가기준란 의 경사도 산출방법은 「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 세부사항」

- 을 적용하고 군계획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
회를 신설하여 심의 자문(안제63조제1항)하는 등
- 상위법령의 일부개정과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
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